



구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858호 |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고 시

- 미추홀구 고시 제2026-47호 인천석정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2

공 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6-646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 공고 4
- 미추홀구 공고 제2026-648호 옥외광고물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5

회 란

| 발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 편집: 미디어홍보실

고 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47호

- 인천석정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85-16번지 일원 “인천석정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4.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인천석정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85-16번지 일원
 - 나. 면적: 7,401.4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명) 인천석정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준)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25, 2층
 - 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14층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2026. 4. 6.
6. 주요 변경 사유 및 내용
 - 가. 공사비 증가 반영 등 정비사업비 변경
 - (당초) 60,944,439,510원 → (변경) 66,166,942,085원

나.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

- (당초) 조합원 분양 34 → (변경) 조합원 분양 31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역명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용도	비고
인천석정 LH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7,401.41	1,825.9263	25,584.1451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용적률(%)	건폐율(%)	층수		
	249.71	24.67	-3/20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유형별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비고
16A	6	26.23	16.60	9.63	임대
16B	17	25.68	16.17	9.51	임대
16C	17	25.82	16.35	9.47	임대
26A	68	40.93	26.74	14.19	임대
36A	17	50.16	36.70	13.46	분양
46A	19	63.14	46.83	16.31	분양
51A	33	70.36	51.96	18.40	분양
59A	58	81.17	59.94	21.23	분양
59B	20	81.55	59.89	21.66	분양
66A	38	90.49	66.90	23.59	분양
총 계	293				

9.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 계획(변경)

공급 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상가 공급 호수
	계	16.60	16.17	16.35	26.74	36.70	46.83	51.96	59.94	59.89	66.90	
계	293	6	17	17	68	17	19	33	58	20	38	7
토지 등 소유자	31	-	-	-	-	-	4	5	9	2	11	2
보류 시설	-	-	-	-	-	-	-	-	-	-	-	-
임대(행복)	108	6	17	17	68	-	-	-	-	-	-	-
일반분양	154	-	-	-	-	17	15	28	49	18	27	5

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1. 기타 관계도서: 생략(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공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646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확인검사 대행자		수리내역
			변경 전	변경 후	
2014-1	기아(주) 인천서비스센터 (대표이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09	(자)세기자동차	대성자동차공업사	변경등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648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4.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제 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4. 9. ~ 2026. 4. 27. (18일간)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동법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 위반사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설치
-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시송달 대상자

처분 종류	성명	송달주소	과태료	반송사유	등기번호	위반내용
본부과	제물포구**** 주택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2**, 1층호 (학익동)	금5,120,000원	이사감	14417-0602 -398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7. 공시송달 내용

-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나.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가산금 규정에 따라 가산금이 가산되며, 체납된 과태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8.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 불법 유동광고물 담당(032-880-4413)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